

	국외장기연수세부규정	규정번호	3-5-3
		제정일자	2004.03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7차
		소관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에 재직 중인 교원의 국외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수의 종류) ① 국외 장기연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국비 해외 파견 연수 및 외부기관 지원에 의한 연구과제 수행 파견연수
2. 대학 추천의 외국 자매학교 파견연수
3.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외교육 및 연구기관 파견연수
4. 학위 취득을 위한 해외 유학 및 개인의 희망에 의한 연수
5. 기타 외부단체 및 국가기관에 선정된 연수

② 제5호의 경우에는 외부단체 및 국가기관에 신청 전 총장의 허가를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.

제3조(자격) 국외 장기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.

1. 국외장기연수 대상자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써 재직기간 7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연수종료 후 정년까지 잔여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인 자
2. 연구실적 및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
3. 보직경력 등 대학 및 학과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자

제4조(자격제한) ① 6개월 이상의 국내·외 장기연수, 연구학기 또는 국고지원 산업체연수를 실시하고 최소 5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.

② 보직교원 및 학과장은 재임기간 중 신청할 수 없다. 다만, 신청하는 당해학기로 임기만료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③ 연수가 확정된 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연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된 후 재신청할 수 있다.

제5조(기간) 기간은 3월 이상 1년 이내로 한다.

제6조(인원) 연수인원은 대상자의 소속 학과 및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매년 2명 이내로 하며, 한 학기에 1명씩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신청서류) 연수를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후 연수 개시일 6월 전에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입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심의 및 선정) ① 국외장기연수에 관한 심의는 교무위원회에서 하며, 총장은 교무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.

② 심의기준은 교무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,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심의한다.

1. 자격조건에 관한 사항
2. 연수기관의 적합성
3. 연수계획의 타당성
4. 연수결과의 활용도
5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부의(附議) 하는 사항

③ 6개월 이상의 국내외 장기연수, 국고지원 산업체연수를 포함하여 연수교원이 동일 학기에 한 학과에서 1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수자 선정에서 제외한다.

제9조(신분보장 및 보수) ① 국외 장기연수교원은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.

② 국외 장기연수자에 대하여는 급여 중 본봉과 연구비를 지원한다.

③ 교육부 주관 국외연수는 교육부 기준에 따른다.

제10조(연수결과보고) 연수기간 종료 후 6월 이내에 소정의 연수결과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수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논문게제, 출판 및 발표 일정상의 차이로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미제출 사유를 제출하고 제출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.

1. 논문연구: 게재 학술지 별쇄본 1부
2. 저술연구: 저서 1부
3. 작품발표: 관련자료 1부

제11조(의무) ① 국외연수교원은 귀국 후 대학에서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.

② 국외 장기연수교원은 제10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,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교원에 대하여는 연수기간 중 지급된 보수 중 연구비를 환수 조치한다.

제12조(허가취소) 총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수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연수교원은 연수취소 통지를 받은 즉시 귀국하여야 한다.

1. 연수기간 중 반국가적, 반사회적 행위를 하였거나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2.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연수계획(연수기간, 연수기관, 연수국, 연수목적)을 변경 한 경우
3. 기타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

제13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